

의안번호	2211462
의 퇴 인	유상범의원
회 답 일	2025.8.11.
추계번호	25D3761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)	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(산림항공관리소 제외)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특별시·광역시·도”라 함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함)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한 6급·7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(현행: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)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(현행: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)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	의무규정
2	안 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	소속관청의 장의 제청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산림청과 소속 기관(산림항공관리소 제외),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근무하며 산림관계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	
2	안 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관할) 제5호 다·라목 신설	산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특별관리 임산물에 관한 범죄와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·산림사업 시행업에 관한 범죄를 추가함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(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	
3	안 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관할) 제5호 다·라목 신설	

2. 상세 사유

-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산림 보호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위 및 수사범위 확대(안 제4조·제5조 및 안 제6조)
 -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, 수사대상범죄에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범죄와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·산림사업시행업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는 경우, 사법경찰관리의 증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사경비 등으로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
 - 다만, 산림보호 및 단속분야 사법경찰관리로 추가지명되는 공무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수사관련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, 산림청은 2025년 예산기준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유림 및 지방자치단체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사법경찰권 운영 지원을 위해 「목재제품 품질관리」 사업에 11억 4,600만원, 세부사업 “품질단속”¹⁾에 4억 9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.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1) · 품질단속(직접) : (25) 5개 지방청×99.8백만원 = 499백만원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nabo.go.kr